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

Analysis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ctivit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Advisory Committee in USA and UK

이 용 남(Yong-Nam Lee)**

초 록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와 영국의 '도서관·정보위원회'(LIC), 그리고 이 기구가 통합·개편된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의 기능·조직구성·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별도 법률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인 미국의 NCLIS는 관련 정부기관과 의회에 대한 강력한 자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IMLS와 함께 미국 도서관·정보서비스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LIC와 Resource는 문화·매체·체육부 산하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부담에 의거한 활발한 정책연구와 자문활동을 통해 영국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자문기구의 법제화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unction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ctivities of NCLIS, LIC and Resource in USA and UK. In result, NCLIS as an independent agency within executive branch performs the powerful advisory function to U.S. Congress and government agencies and supports to improve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with IMLS conducting the government policies. LIC and Resource in UK renders advisory function to improv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with government fund although they are only committee under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

키워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NCLIS, LIC, Resource

* 이 연구는 2003학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lyn0802@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03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12월 18일

1. 서론

도서관·정보 정책은 각각의 현안에 단발적으로 대처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국가단위의 도서관·정보 정책이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확고한 틀을 마련하여, 모든 정책적 이슈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적 도서관정책 순환 모형은 다음의 3개 과정이 기능적으로 연결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정책순환의 제1의 과정은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수많은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 조정하며, 그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자문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순환의 제2의 과정은 위에서 연구·개발된 정책을 각종 법규나 규정 등으로 구체화하여 공식화 시키는 작업이다. 그리고 정책 순환의 제3의 과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도서관행정 전담부서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피드백되어 다시 기존 정책의 성과분석,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조정(제1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엮여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도서관정책 순환모형을 제대로 가동시키는 엔진역할을 하는 기구는 첫 번째 과정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정책위는 1989년 9월에 처음 출발하여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다가, 그나마 2000년 1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2002년 12월 정부 훈령에 의거 새로 발족하였으나 법률적 기반이 없는 취약한 상태이다.

그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법률적 토대 마련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몇몇 연구(문화정책개발원 2002, 185)에서는 물론, 도서관 현장에서 자주 거론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진국 중 비교적 모범적이라는 미국과 영국의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의 분석은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정책 개발 시스템에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아래,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와 영국의 '도서관·정보위원회'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그리고 이 기구가 통합·개편된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의 기능, 조직과 활동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2. 미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NCLIS)

2.1 설립과정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NCLIS)의 설치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969년에 L. B. Johnson 대통령은 도서관의 역할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에 임시 자문그룹으로 '국가도서관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Libraries: 일명 Knight Commission)¹⁾를 설

1) Doulas N. Knight은 이 위원회의 대표적 인물로서, 1969년에 보고서를 Libraries At Large : Tradition, Innovation, and the National Interest(New York : R. R. Bowker) 책자로 펴냈다.

립한 바 있다. 그런데 Knight Commission의 건의사항 중에, 도서관정책 계획기능을 가진 연방정부 산하의 상설기구로서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의 설치를 권고하였던 것이다(Drake 2003, 33). 이에 따라 1970년 미국 공법(Public Law 91-345 : 약칭 NCLIS법)이 제정됨으로써 대통령 직속의 상설 독립기구로서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가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법률은 1973년, 1991년, 그리고 1996년에 부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²⁾ 설립 당시(1970년)의 법률 제2조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도서관·정보서비스는 국가 목표의 달성과 국가 교육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필수적인 바, 이러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 및 사설기관과 협력할 것임을 미국 의회가 확인한다'는 강력한 표현으로서 NCLIS의 설립에 따른 국가의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제3조에서 보건·교육·복지부³⁾는 행정부 내의 독립기관(an independent agency within executive branch)인 NCLIS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예산, 회계, 재정보고, 직원, 물품조달 관련 사항 포함)를 제공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2.2 목적과 기능

설립 당시의 법률 제3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국가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을 개발하고 건의하며, 정책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자문할 기본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지닌다.

① 성명서, 안전제시 기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보고서 등의 방법으로 국가 정책 수행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 자문한다.

② 농촌지역 또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노인들을 포함하여 전체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 요구에 관해 연구·조사·분석하며, 이들 요구가 정보센터, 초·중·고교 도서관 그리고 공공·연구·특수도서관 등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연구·조사·분석한다.

③ 현존하는 도서관·정보자원과 서비스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그리고 현존하는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④ 전국적인 도서관·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총체적 계획을 개발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의 전체 도서관·정보자원을 고려하여 연방·주·지역단위의 활동 계획을 개발한다.

⑤ 문헌정보학에 관련하여 연방·주·지방정부 기관이나 사설기관에 대한 자문권한을 지닌다.

⑥ 전국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결기능으로서 국가의 도서관·정보 활용능력을 확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을 증진시킨다.

2) 당초의 법률과 개정된 법률의 원문은 <http://www.nclis.gov/about/background/background.html>에 수록되어 있다.

3) 도서관·정보서비스 정책 소관부처의 명칭이 오늘날은 '교육부'로 되어 있으나, 당시 명칭은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이었다.

⑦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회계년도 동안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⑧ 자문 보고서, 증언이나 성명의 복사물, 요약 보고, 연구·제안의 보고 등을 포함하여 각종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간한다.

2) 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방기관 및 공·사립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고서·발견사실·연구물·기록 등을 출판하여 배포할 권한을 지닌다.

3) 위원회는 이 법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4) 연방정부기관의 장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법률의 목적 수행을 위해 이 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한다.

그런데 NCLIS의 기능 관련 조문은 부분적이거나 몇 차례 개정되었다. 우선 1991년도의 개정 법률에서는 위에 언급한 당초의 법률 1)호 ⑥항의 '전국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협동 네트워크'로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도서관·정보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고자 하였다. 그리고 1996년도의 개정 법률에서는 기능에 여러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도서관 행정기구인 IMLS(Institute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⁴⁾의 발족에 따른 수정 보완이었다. 즉, NCLIS가 도서관

서비스에 관련하여 IMLS가 갖고 있는 책무와 권한에 연관된 전반적 정책에 관하여서도 IMLS 당국에 자문할 책임과 함께 업무성과 측정 및 조정의 기능을 가지며, 덧붙여서 NCLIS가 국가 박물관봉사위원회(National Museum Service Board)와의 합동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열어 IMLS 사업에 관련된 정책을 함께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CLIS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미국의 도서관·정보정책을 조사·연구·개발하여 이를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보고·건의·자문하며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3 조직 구성 및 운영

NCLIS는 의회로부터 위임된 법률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다. NCLIS법 제6조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위원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15명인데, 의회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기: 5년으로 한다.

③ 자격: 전체 위원 중 5명은 전문직 사서이거나 정보전문직이어야 하며, 그 밖의 다른 위원도 도서관·정보 서비스에 관한 우리 사회의 요구에 대한 흥미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

4) IMLS는 교육부가 관장하던 연방정부의 도서관 프로그램과 박물관 프로그램을 넘겨받아 관리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박물관 및 도서관봉사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에 의해 설립된 정부 행정기관이다. IMLS는 '도서관봉사 및 기술법'(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LSTA)과 '박물관봉사법'(Museum Services Act)을 관장하며, 도서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1명은 도서관·정보서비스와 정보학의 기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며, 또 다른 1명은 고령자의 도서관·정보서비스 요구에 관한 지식을 지닌 사람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④ 위원장 :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⑤ 직원 임명 : 위원회는 위의 법에 명시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직과 기술직 상근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NCLIS는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사무국(Office of Commission)을 두어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⁵⁾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이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즉, NCLIS법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국가 명의로 정부 보조금, 기부금 또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출에 대한 자금요청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법 말미(7조)에는 1970년 회계년도에는 50만불 그리고 1971년 회계년도와 그 이후 회계년도에는 매년 75만불의 정부재정부담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재원 범위는 1991년 개정 법률에 의해 보다 확대되었다. 개정법률 제4조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면 부동산이나 동산을 막론하고 기부물품, 유증재산

등을 수령·보유·관리·활용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1992 회계연도부터는 \$911,000의 재정부담을 명시하였던 것이다.

2.4 주요 활동

NCLIS 창설 이후 30여 년 동안의 주요 활동을 사업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CLIS 2003, NCLIS at 25; NCLIS 2003, Annual Reports; NCLIS 2003, Highlits of the Year).

1) 1970-74년

이 기간 동안은 NCLIS의 창설에 따른 조직의 기반을 다지는 활동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초기 사업으로는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역단위로 기초적인 각종 공청회를 열고 이에 수반되는 정책연구 활동을 벌였는데, 사업의 영역은 대체로 ① 이용자의 정보 요구 이해 ② 도서관과 정보시스템들의 재정 문제 ③ 현존하는 도서관과 정보시스템의 충분성 여부 평가 ④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제공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 ⑤ 도서관과 정보시스템의 직원 문제 등 5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기간동안에 또 다른 의미있는 활동은 저작권에 관련된 자문활동과 '도서관 및 정보기관 육성을 위한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WHCLIS)⁶⁾를 구성토록 한 일이라

5) 2000년 현재 사무국의 직원수는 12명임

6) 1974년에 법률(미공법 93-568)로서 마련된 이 백악관 회의는 NCLIS에서 연구·조사하여 제안된 정책사항을 각급 도서관 및 정보처리기관에 권장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할 사항을 검토하여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의 구성은 28명 이내의 각계 인사로 하고, NCLIS의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할 수 있다.

2) 1975-79년

이 기간은 그 동안의 계획단계가 수행단계로 바뀌어 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수행된 연구의 주제는 ① 전국적인 네트워크에서 의회도서관의 역할 ②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영향 ③ 전국적인 도서관 요구의 조사 ④ 도서관 사진복사의 양과 성격 ⑤ 전국적인 연속간행물 시스템 ⑥ 전국적인 네트워크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 등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주목할만한 사업은 처음으로 개최한 '백안관 회의'(WHCLIS)였다. 이 회의는 지역단위와 주 단위의 예비회의를 거쳐, 각 지역으로부터 806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1979년 11월 Washington, D.C.에서 5일 동안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제는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서관·정보서비스, 평생 학습의 증진, 기관과 전문직의 발전, 사회의 효과적인 통괄,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의 강화 등 5개 영역이었다. 회의에서는 수많은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문해능력 훈련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만인에 대한 정보접근의 증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지역사회 정보센터와 독자적인 학습센터로서의 도서관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64개 정책제안을 채택하였다.

3) 1980-84년

NCLIS는 1980년대에 와서는 ① 도서관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 명세서의 개발 ② 연방정부의 정보 배포 증진 ③ 자원 공유와 기술 적용

을 통한 도서관·정보서비스의 증진 등 3가지 주요 프로그램목적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NCLIS는 1979년도의 백안관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처리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자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였다. 즉, 지역 사회 정보와 레퍼럴 서비스,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정보 서비스,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에서 특수도서관의 역할을 위한 3개의 태스크포스를 추가시켜 기존의 태스크포스와 함께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위원회가 연방정부기관에 자문한 내용도 적지 않았다. 당시 국가적 관심이 교육에 쏠려 있는 시기인지라 강력한 학교도서관 미디어 센터 서비스와 전체 학생들의 정보능력 신장을 위한 자문은 물론이려니와, 의회에 대해서는 '도서관 서비스 및 건축법'(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의 개정 문제에 대해, 상무부에 대해서는 기상정보에 대해, 국무부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의 종합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국방부에 대해서는 문자변환 기술에 대해, 농무부에 대해서는 농민의 정보욕구에 대해 건의하는 등 활발한 자문활동을 전개하였다.

4) 1985-89년

위원회는 80년대 중반부터 교육을 위한 정보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개입과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87년에 영국의 국가대표도서관(British Library) 및 캐나다의 공공정책연구소 등과 함께 '경제에 있어서 정보의 역할'이란 주제로 3차례 회합을 가진 바 있다. 이 모임의 결과로 정보와 관련 기술의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한 9가지의 공공정책 제안을 마련하고, 이를 담

은 Glenerin선언문(Glenerin Declaration Toward Coordinated Policy Agenda)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88년부터 도서관·정보서비스 증진에 공헌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사서와 도서관 제외)를 표창하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백악관회의를 지속시키기 위해, 위원회는 제2차 백악관회의(WHCLIS)를 1989년부터 91년 사이에 개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5) 1990-94년

제2차 백악관회의는 91년 7월에 5일 동안 열렸는데, 이 회의의 주제는 문자해독을 위한 도서관·정보서비스, 민주주의를 위한 도서관·정보서비스, 그리고 생산성을 위한 도서관·정보서비스 등 3가지 영역이었다. 1979년도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2차 회의준비를 위해서도 지역단위, 주 단위 예비회의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2,500여개의 정책 안건을 추출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의 본회의에는 984명의 대표와 1천여 명의 명예대표, 외국손님 및 옵서버 등이 참여하여 국가의 도서관·정보정책을 논의하였으며, 회의 결과 95개의 정책제안을 결의하였다. 정책 제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의 문제와 정보고속도로의 문제 두 가지였다.

NCLIS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들 사안에 대해 관련 공청회 개최, 학교도서관의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학교도서관미디어 관련 조항 활동에 초

점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중점추진 사안으로 열거된 공공도서관과 인터넷 등에 관한 연구에도 주력하였다.

그리고 91년도에 표준화된 데이터 요소와 정의에 입각하여 처음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데이터가 인쇄형태와 MARC 형태로 간행되고 그 후 매년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도서관 봉사 및 건축법'(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LSCA)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6) 1995-99년

이 기간 동안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첫째로, '도서관 봉사 및 건축법'(LSCA)을 대체하는 '도서관봉사 및 기술법'(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LSTA)과 새로운 도서관 행정기구인 IMLS의 창설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LSTA법은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연방지원금과 테크놀러지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1966년에 제정된 법이며, IMLS는 새로운 법 체제에서 도서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프로그램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기 위한 정부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이들에 관련된 정책자문 활동이 중요 사업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련된 활동이었는데, 그 일환으로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와의 조약 체결(1996)과 실행에 관련된 자문활동 등의 사업이다.

셋째로는, 정부의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의 문제를 위한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활동과 장애자에 대한 도서관·정보서비스에

관련된 활동이다.

넷째로는, '백악관 밀레니엄 위원회'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자매도서관(Sister Libraries) 운동'⁸⁾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이었다. 이 운동은 1999년에 100개의 도서관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다른 관공의 도서관과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미국 내에서 42개 주의 143개 도서관이 참여하였다.

7) 2000년 이후

도서관의 전반적인 정책과 도서관의 재정지원에 대해 IMLS를 비롯한 다른 연방정부와 관련기간을 자문하며, 중요 이슈에 대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NCLIS의 기본적인 사업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NCLIS의 정책자문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정확한 현상의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아래 위원회는 오랫동안 통계조사 등의 기능을 중요하게 유지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 위원회는 모든 활동의 기초사업으로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와 공동으로 매 5년마다 관종별로 도서관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과 인터넷' 조사는 2000년에 총 6차례 째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위원회는 2000년도에 어린이들에게 인터넷을

접속시키는 학교와 도서관에 선별접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정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서관과 연방정부의 역할 문제, 정보격차와 장애자에 대한 서비스 등의 문제에 대해 미국도서관협회(ALA)와 함께 이를 자문하고 대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자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도서관·정보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프로그램과 전자정부 정보의 생성, 배포 및 접근성에 관련된 정부정보 정책을 검토하는 일을 계속하여, 2001년에는 정부정보 배포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건의하는 보고서(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ublic Information Dissemination)를 완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의회에 '도서관봉사 및 기술법'(LSTA)의 개정을 건의하고 2003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밖에 특기할만한 사업으로는 재난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청각 자료 'Trust and Terror'⁹⁾의 발간 작업이었는데 이는 CD판으로 2003년 초에 배포되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연방정부의 영향력 있는 부처에서 이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기구 해체를 주장하며, 예산배정의 삭감을 시도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7) 백악관 밀레니엄 위원회(a White House Millennium Council)는 새로운 2000년대가 긍정적인 변화의 힘으로서 작용하는데 폭넓은 관심을 유도하고, 미국의 세기가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대통령과 영부인에 의해 창설되었다.

8) 이 운동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민주적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는 기본시설이며, 민주시민 정신은 다른 나라 다른 국민들과 함께 배우고 확산된다는 전체 아래,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여 이들 도서관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오늘의 젊은이들이 다른 국민을 이해하는 능력(지구촌에서 평화의 핵심요소)을 확대시킨다는 취지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들이 어린이와 10대 소년·소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서관들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는 운동이다(<http://www.nclis.gov/millennium/descript.html>).

9) 이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재년의 여파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는 시청각 자료인데, 이 작품은 미국도서관협회, 주립도서관 당국의 간부진 등 여러 기관의 사서들의 사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였을 뿐 아니라, 2002년 LFLA 대회에서도 시사회를 가진 후, 영어 이외에도 불어, 스페인어 판 등으로 간행된 심혈을 기울인 작품임.

2.5 NCLIS 해체 위기와 극복

NCLIS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였던 예산 전액 삭감 및 기구해체 논란의 자초지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초에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이 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이상 제공하지 말 것을 의회에 공식 제안함으로써 문제가 발단되었다. 즉, NCLIS의 업무는 정부 내 다른 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연간 1백만 불의 정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해 2월 의회의 관련 예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 NCLIS의 간부들은 예산 당국의 이러한 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오히려 NCLIS에 대한 재정부담을 증액하여 280만 불을 지원할 것과 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NCLIS법의 일부 개정을 요구하였다. 즉, 지난 30여 년 동안 위원회의 활동과 국내의 도서관·정보서비스 향상에 미친 업적을 제시하고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의 순간에 오히려 도서관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도 계속된 심층적인 증언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NCLIS법의 기본 취지를 부각시키며 설득해 나갔다. 즉, 당초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 출발하였던 위원회의 '독립성'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구라는 핵심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만약 예산당국의 제안대로 NCLIS의 기능이 IMLS 등의 다른 기관으로 흡수된다면, 지금까지

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 것이라는 반론을 펴 나갔다. 도서관계의 반박 논리는, "IMLS가 전국 도서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집행기관인 반면, NCLIS는 정책 자문기구이므로, 두 기관은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의 관계"(Drake 2003, 32)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과거에도 NCLIS의 개개 정책제안에 따라서는 비판을 받은 적도 적지 않았다. 한 예로, 미국 상무부의 국가기술정보서비스(NTIS)에 대한 자문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의 처리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심지어 NCLIS 무용론을 제기하는(Sprehe 2001) 사례 등이 그러한 일부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에는 NCLIS를 지원하고자 하는 운동이 도서관 안팎의 여러 그룹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2002년 5월에는 많은 지역의 도서관 사서들이 해당지역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갖기 위해 Washington을 방문하였는가 하면, 개인 단위에서부터 각급 도서관협회들과 산업체 그룹까지 NCLIS 지원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는 미 의회 내에서 NCLIS를 지원하는 14명 의원들이 관련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정부당국의 구조개혁 제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NCLIS가 요청한 대로 280만 불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여 힘을 보태었던 일이다.

그러나 미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02년 10월 1일을 넘길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2003년에 넘어와서 미 의회는 예산당국의 구조개혁 제안을 기각시키고, 그 대신에 NCLIS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

준인 1백만 불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예산당국(OMB)은 더 이상 NCLIS의 해체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역시 같은 수준의 금액인 1백만 불을 2004 회계년도의 지원액으로 책정하였던 것이다.

이로서 NCLIS는 줄기찬 투쟁 끝에 이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명백하게 재확인시켜 위기를 극복하였다. 결국 미국 전역의 도서관계와 여론의 힘을 배경으로 “미국 행정부 내에서 가장 작은 기관 중의 하나인 NCLIS를 미 의회에서 지지그룹 의원들이 구해냈다”(Drake 2003, 32)는 진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 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LIC와 Resource)

영국의 도서관·정보 서비스에 관한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는 1995년에 설치된 ‘도서관·정보위원회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LIC)와 이 기구가 개편되어 2000년 4월에 발족된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일명 Resources)가 있는데, 이 기구들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3.1 설립 과정 및 변천

영국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을 관장하고 있던

국가문화유산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¹⁰⁾ 장관이 1993년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정보 분야 정책에 관하여 일관된 권한을 지닌 위원회 설립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1995년 9월에 도서관·정보 분야에서 정부에 전문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비정부부처의 공공기구(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로서 ‘영국도서관·정보위원회’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LIC)가 창설되었다. 그리하여 LIC는 이후 5년 동안, 관련 정부기관에 도서관·정보서비스 전반에 걸친 정책적 자문과 도서관·정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및 연구결과의 확산이라는 기본 임무를 수행해 왔다(British Council 2000).

그러던 중, 몇 년 안 되어서 이 기구에 대한 변혁의 바람이 불게 된다. 즉, 1997년 2월에 국가문화유산부는 ‘공공도서관은 정보기술 혁명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공공도서관 정책 내용과 함께 LIC 조직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정보위원회(LIC)와 England 지역 공공도서관 문제에 관해서만 자문하는 ACL(Advisory Council on Libraries)을 통합하여, 영국 내에서 도서관·정보 분야 자문을 위한 단일 기구를 마련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던 것이다¹¹⁾(김창수 1999, 175, 183).

10) 당시 영국에서 도서관·정보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이름은 ‘국가문화유산부’였으나, 현재는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로 바뀌고 부내의 담당 부서는 도서관·지역사회과(libraries & Communities Division)로 되어 있다.

(http://www.culture.gov.uk/about_dcms/organisation_structure/default.htm)

그 후 1998년 7월에 정부는 다시 문화·정보 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제안서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를 발표하였는데, 이 제안서에서 LIC의 조직개편 방향이 구체화되었다. 제안서는 정부부처와 비정부부처 공공기구 (NDPB)와의 관계에 있어 지금까지의 조치에는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중앙으로부터의 정책적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존의 도서관 부문이 너무 세분되어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기능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과 비정부부처 공공기구(NDPB)가 독립성이나 재정적 유연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LIC가 도서관·정보서비스 분야 전체에 대해 정책적 리더십을 갖는 대신 영국국가도서관은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로서 LIC는 국가도서관의 연구개발부(BL Research and Innovation Center: BLRIC), ACL, 박물관·미술관위원회(Museum and Galleries Commission) 등과 통합하고, Royal Commission on Historical Manuscripts와의 관계조정을 제안 하였던 것이다(김용원 2003, 118).

이렇듯 문화·정보 분야 전반에 걸친 새로운 정책 자문기구 창설을 전제로 한 대폭적인 기구개편의 절차에 따라, 그 첫 조치로서 1999년 4월에 영국국가도서관 연구개발부의 기능을 LIC로 이관시킨 후, 2000년 4월에 모든 관련 기구가 통합된 새로운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일명 Resource)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LIC 1999, Annual Report 1998/99).

3.2 목적과 기능

3.2.1 도서관·정보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LIC)

이 위원회는 제한된 재원과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에서 모든 형태의 도서관·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사이트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LIC 199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 정부기관에 대한 자문

① 정부가 조언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분야의 모든 사안들에 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단일 조직의 역할을 한다.

② 어떤 사안이나 적절한 대응책에 대해 정부 당국의 관심을 유도한다.

2) 다양한 도서관·정보 시스템의 조정

① 자원 이용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이용자의 편의와 소요자금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정부와 도서관·정보서비스 실무자들에게 양질의 조언을 제공한다.

②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관들 간의 상호협력 을 촉진한다.

11) 당시 이 보고서의 제안에 대해 영국도서관협(LA)는 통합된 기구에 공공도서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명된다는 전제 하에서 공공도서관 자문의 단일 소스를 제공하기 위한 LIC와 ACL의 통합을 환영하였다(김창수 1999, 188).

③ 도서관·정보 관련 집단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업무수행 확산을 위한 촉매작용을 한다.

④ 영국 내의 도서관·정보 부문에서 조정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과 LIC 간에 효율적인 조정 매카니즘을 만들고 유지하며, 발전시킨다.

3) 국제 업무

① 정부의 요청이 있거나 정부정책과 관련된 경우에, 유럽연합·유럽의회 및 도서관·정보정책과 자금 문제에 대한 영국 도서관·정보기관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표명한다.

② 일련의 유럽도서관 계획의 자금확보 경쟁에 관련된 영국 기관들이 조언을 요청할 경우, 국가적 관점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③ 도서관·정보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의 정책 전개과정을 주시하여 정부와 그 정책수행에 연관된 모든 도서관·정보기관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제공한다.

④ LIC와 국제적인 도서관·정보기관, 협회, 네트워크 등과의 협조를 위한 효율적인 매카니즘을 만들고 유지하며 발전시킨다. 그리고 영국내의 협회와 관련 조직체 및 개인들이 유용하게 연결되도록 촉진한다.

4) 연구

① 정부정책과 관련되거나 기타 관련 있는 기

관의 자문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연구전략을 수립·개발·평가·수정한다.

② 위의 전략에 따라, 어떻게 자원들을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 특히 영국국가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구자금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에 대해 자문한다.

③ 위의 전략과 관련되거나 혹은 그 전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LIC의 자체 연구자금을 제공한다.

이상에서 살핀 LIC의 목적을 요약하자면, 정부기관에 대해서 도서관·정보 부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권고와 자문을 행하고, 다양한 도서관·정보 시스템을 조정하며, 긴급한 과제에 대해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연구전략을 수립·개발·평가하며, 도서관·정보 부문에 관한 국제적인 정책 전개과정 속에서 영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일로 요약할 수 있다.

3.2.2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Resource)

LIC가 합병되어 2000년에 출범한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s)는 위원회 헌장(Resource's Manifesto)을 통해¹²⁾

12) 위원회 헌장에서 밝힌 위원회의 핵심사명(Core Value)은 아래와 같다.

- ①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은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안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시역할을 지닌다.
- ② 컬렉션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풍부히 하는 일은 각 부문의 발전을 위한 기본 출발점이다.
- ③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이용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④ 이들 서비스는 물리적·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 부문의 발전은 활발하고 전문적인 토론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⑤ 동반자 정신과 협력은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위원회의 핵심적 사명을 제시하고, 그 아래 여러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source 2003, Manifesto).

1) 전략적 리더십

① 각 부문¹³⁾을 위한 전략적 방향 설정에 대한 강력한 비전과 의식을 개발하며, 전략적 요구와 우선순위를 확인한다.

② 정보와 연구에 대한 요구를 관리한다.

③ 박물관·도서관·기록보존소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다.

- 평생학습·사회변화와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일
- 창의성과 즐거움을 지원하는 일
-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폭을 확대하는 일
-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일
- 기술변화에 따른 혜택을 추구하는 일
- 달성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전략, 목표, 산출물의 개발
- 위원회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지원하는 일, 등.

2) 변론 (advocacy)

① 예산관련 기관과 정책 수립자들에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각 부문의 입장을 변론한다.

② 각 부문에 대한 예산관련기관의 책임 이행을 점검한다.

③ 이 역할은 핵심 이슈에 대한 상호간 이해의 바탕에서 가능한 만큼, 각 부문 내에서 폭넓은 협의를 한다.

3) 자문

① 관련 정부기관에 소속된 각 부문에 대해 자문한다.

② 다음 관련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실행 방안을 자문한다.

- 기준, 책임, 컬렉션 관리
- 정보·통신 기술
- 교육과 평생학습
- 재정관리 훈련 및 직원 개발, 등.

한마디로, 이 위원회는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등이 국민의 삶 속에 연결되어 그들의 상상력·학습·창의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전략적 리더십을 지니고, 관련 부문의 입장을 변론하며, 각 부문의 전문적 사안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자문하고 조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위원회 출범 직후, 영국도서관협회(LA)가 제기한 상호 협력 계획에 대해 이 위원회가 응답한 내용은 양 기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위원회의 활동은 영국도서관협회와 보완적인 관계이며, 협회의 정책 제안 우선순위 등에 대해 토의할 기회를 갖는 일을 환영하며, 양 기관은 정책 수립자들에게 제공할 사례들을 추적하고 제시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입장을 변론하는 역할(advocacy)을 하는데 비해, 로비(lobby)의 역할은 정부 자문기구보다는 회원 조직인 도서관협회에 더 적절하니 만큼, 이 두 개념(advocacy와 lobby)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Resource 2003, Respons to the

13) 위원회의 관심 대상인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 3개 부문을 일컬음.

Library Association Draft Corporate Plan)는 요지로 응답한 바 있는데, 이는 위원회와 전문직 회원단체인 도서관협회가 동반자 관계 이면서도 역할과 기능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3.3 조직 구성 및 운영

3.3.1 도서관·정보위원회(LIC)

LIC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주무부(설립당시는 문화유산부, 현재는 문화·매체·스포츠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 중 영국국가대표도서관(British Library)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과 관련 각 부처 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LIC는 필요한 경우에 주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출범 직후 1996년 봄에 연구소위원회(Research Sub-Committee)와 국제소위원회(International Sub-Committee) 등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후 재정·관리소위원회(Finance and Administration Sub-Committee)와 훈련태스크 그룹(Training Task Group)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

연구소위원회는 영국의 도서관·정보 분야에 관련된 연구의 가치를 분석하여 중복을 피하면서 추진 계획을 결정하는 임무와 중앙 정부기관의 각 부처, 지방정부기관, 지역단체, 국가대표 도서관, 비즈니스 기관, 예술·문화단체 등에

대한 자문 임무, 그리고 연구정책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연구전략의 조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소위원회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정보 분야의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데, British Council 및 국가대표도서관의 국제 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 도서관계획(Euro-pean Libraries Programme)의 국내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LIC 활동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이들 소위원회는 영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LIC 위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하여 각 소위원회 별로 13-14명으로 되어 있으며, 출범 첫해에는 총 9회의 모임을 갖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LIC에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비교적 소규모의 사무국을 두고 운영해 왔다(LIC 1999, Annual Report 1995/97).

3.3.2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 (Resource)

2000년에 새로 출범한 이 위원회 역시 비정부부처 공공기구(NDPB)로서 17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과 위원장은 문화·매체·스포츠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리고 이 위원들의 모임은 1년에 6회로 되어 있으며 역시 필요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위원회 사무국은 사무총장 아래 5개의 팀¹⁴⁾을 두고 있으며, 직원은 대체로 각 팀당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사무국은 Strategy & Planning Team · Libraries & Information Society Team · Learning & Access Team · Communications & Standards Team · Support Services Team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총 세입은 2003년의 경우 2천4백66만 파운드에 달한다.

3.4 주요 활동

3.4.1 도서관·정보위원회(LIC)

LIC 출범 초기에 가장 역점을 둔 활동은 ① 21세기 도서관의 비전에 기초해서 앞으로 수년간의 주요 목표와 의제를 설정하고, ② 위원회의 중심사업을 추진해 나갈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③ 비정부부처 공공기구(NDPB)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에 경제·교육·사회정책 개발 중 도서관·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제시하는 '2020 Vision'을 1997년에 출간하였다.

초기 2년간, 위원회는 각급 정부기관, 도서관 및 관련단체에 무려 30건 이상의 의견을 제출하고, 영국 전역의 70개 이상 도서관을 방문하였으며, 주무부처를 비롯한 정부 및 관련기관과 60회 이상의 모임을 갖으면서 자문기능을 수행하였다(LIC 1999, Annual Report 1995/97).

1997년부터는 도서관·정보서비스에 대한 국가 정책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평생학습, 그리고 콘텐츠의 디지털화 등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활동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LIC는 정부당국의 기구개편 계획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며 그 준비 작업

을 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98년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제안서(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에 영국국가도서관 연구개발부(BLRIC)의 기능을 LIC로 이관시키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LIC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작은 규모의 사무국 직원(4명)에 합병되는 국가도서관 직원(16명)의 통합 문제 및 사무국 건물의 이전 문제 등에 관해 관계기관과의 논의와 협상을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0년에 통합·출범할 새로운 자문기구(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¹⁵⁾의 기능, 구조 등에 관해 '박물관·미술관위원회' 측과의 협의 및 공동직업에도 주력하였다(LIC 1999, Annual Report 1998/99).

이 위원회 발족이후 5년 동안의 주요 활동 실적은 다음과 같다(LIC 2000, Publication).

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문과 제안: 설립 이후 97년까지 30여건, 98년 11건, 99년부터 통합 시까지 17건

② 연구보고서: 1999-2000년에 발간된 보고서는 CIRCE: better communities through better information를 비롯하여 89종

③ 정책보고서: Libraries: the Essence of Inclusion을 비롯하여 21종

3.4.2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 (Resource)

2000년 4월 출범 직후에는 조직을 정비하고, 그해 6월에는 이 기구의 이념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위원회 선언문'(Resource's Manifesto)를 마련하는 등 사업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15) 통합된 새로운 자문기구는 2000년 출범 시까지는 MLAC(Museums, Libraries & Archives Council)란 이름으로 불리며 준비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기록보존소 부문의 현안에 관하여 정책 대안을 연구하며, 정부에 대해 자문하는 일이었는데, 이러한 활동은 과거 LIC 조직에서 수행하던 임무와 유사하다. 도서관에 관련된 활동을 살펴보면, 2002년 말까지 모든 영국의 공공도서관을 인터넷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People's Network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정부의 공공도서관 전략개발을 다룬 'Framework for the Future: Action Plan 2003-06'의 발간에 비전을 제시하며 자문하는 등, 관련기관에 대한 조언과 건의 활동, 그리고 관련 정책연구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부문의 발전을 위한 특수 목적의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Resource 2003, Annual Review).

4. 양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종합 분석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영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조직 및 활동상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그 특징을 항목별로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4.1 목적과 기능

① 미국의 경우, '문헌정보학위원회'(NCLIS)는 매우 광범위한 기능을 법률(Public Law 91-345: 약칭 NCLIS법)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정책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자문, 도서관·정보요

구와 관련된 서베이와 연구 수행, 전국적인 도서관·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의 개발, 문헌정보학에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와 지역정부 및 사설기관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② 영국의 경우, '도서관·정보위원회'(LIC)는 도서관·정보서비스 정책에 관해 정부기관에 자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및 국제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통합되어 2000년에 발족한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는 각 부문별 정책수행을 위한 전략적 리더십을 개발하고, 해당 부문의 입장을 변론하며, 관련 정책을 정부기관에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소수위원 중심의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자문기능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정책연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미국과 영국의 이들 위원회는 회원들 권익옹호를 위한 전문직 단체인 미국도서관협회 및 영국도서관협회 등과의 역할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4.2 조직 구조 및 운영

① 미국의 경우는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와 달리 전체 도서관을 관장하는 연방정부 부처(部: Department)가 없는 셈인데, 그 대신 연방정부의 도서관 지원금을 배분하며 도서관 육성 업무를 집행하는 IMLS(Institute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와, 국가 도서관 정책 업무 연구·개발·자문기관인 NCLIS 두 기관이 도서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특수한 구조(Dowling

표 1. 영국과 미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비교·분석 요약

구분	미국(NCLIS)	영국(LIC와 Resource)	
목적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정책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자문 • 도서관·정보 요구와 관련된 서베이와 연구 수행 • 전국적인 도서관·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 문헌정보학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와 지역정부 및 사설기관에 대한 자문 등 	<p><L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보 부문에 관해 정부기관에 권고와 자문 • 다양한 도서관·정보시스템의 조정 • 긴급한 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촉구와 대응책 제시 •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연구전략 수립·개발·평가 • 세계적 관점에서 도서관·정보 분야의 문제 조정 <p><Resou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립에서 전략적 리더십 수행 • 관련 부문의 입장을 변론 • 정부기관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 	
조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출발 • 별도의 법률(Public Law 91-345)에 의거 설치·운영 • 도서관행정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는 없는 대신, IMLS가 행정집행을 하며, NCLIS는 도서관정책의 연구·개발·자문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C와 Resource는 문화·매체·체육부 산하에 설치된 비정부부처 공공기구(NDPB)이며, 도서관행정전담부서는 도서관·지역사회과임 • 1995년 출발한 LIC가 영국국가도서관 연구개발부(BLRIC)의 조직과 기능을 흡수하고, 박물관·미술관위원회와 통합하여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 발족
	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15명 정도 : 의회도서관장은 당연직) • 위원장 : 대통령 지명 • 전체 위원중 1/3정도는 전문직 사서 또는 정보전문직 	<p><L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주무부 장관이 임명 •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과 관련 각 부처 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부 장관이 임명(14명, 국가대표도서관장은 당연직) <p><Resou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장관이 위원 임명(17명)
	운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의와 함께 소위원회·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 • 사무기구 : 위원장이 직원을 임명토록 법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의와 함께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LIC위원 아닌 사람도 소위원회에 참여) • Resource의 전체회의는 연간 6회, 소위원회는 수시 개최 • 사무기구 : LIC 시절에는 소규모였으나, 국가대표도서관 연구개발부를 흡수하고 Resource로 통합 후에는 대형화(5개팀의 조직)되었음.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책 수행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자문 활동 • IMLS 당국과 연방정부의 관련부처에 대한 자문활동, 업무성과 측정 및 조정 활동 •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 요구조사·분석과 정책 관련 연구·개발 및 보고서 발간·배포활동 • 매년 지난 회계년도 동안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보 분야 발전전략과 정책에 관련된 연구계획 결정과 조정 활동 • 관련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지역단체, 국가대표도서관, 비즈니스 기관 등에 대한 자문활동 • 정책제안 및 성명서 발표,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간행 활동 • 도서관·정보 분야의 국제 활동 • 매년 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주무장관에 제출하는 활동 등. 	

2001, 134)이다. 그리고 이 NCLIS는 최고 행정수반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되는 독립적인 상설기관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위원회는 별도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예산·직원·물품조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설 사무국을 두고, 설립초기에는 연간 50만 불로부터 시작하여 2003년 현재 1백만 불의 정부재정지원을 받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② 영국의 경우, 1995년에 발족된 LIC와 이 기구를 통합·개편하여 2000년에 발족한 Resource는 다같이 정부의 '문화·매체·체육부' 산하에 설치된 비정부부처 공공기구(Non-Departmental Public Body)이다. 이들 위원회는 산하에 필요한 소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상설 사무국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Resource는 3개 부문을 함께 관장하고 있는 거대한 위원회 조직과 사무국으로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3 주요 활동

① 미국의 경우, NCLIS가 수행하여 온 주요 활동을 요약하자면, 국가 정책 수행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 자문하는 활동, 도서관 행정기관인 IMLS 당국과 연방정부의 관련부처에 대한 각종 자문활동, 업무성과 측정 및 조정 활동, 그리고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 요구를 조사·분석하여 정책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발간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1월 말까지 지

난 회계년도 동안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입장과 활동상을 검증받고 있다.

② 영국의 경우, LIC가 수행하여 온 주요 활동들은 도서관·정보 분야 발전전략과 정책에 관련된 연구계획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활동, 도서관 관련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지역단체, 국가대표도서관, 비즈니스 기관 등에 대해 자문하는 활동, 정책제안 및 성명서 발표, 연구 보고서, 정책보고서 등을 간행하는 활동, 그리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정보 분야의 문제를 조율하고 국가 입장을 대변하는 국제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Resource의 주된 활동은 도서관을 비롯한 3개 부문의 현안에 관하여 정책 대안을 연구하며, 정부에 대해 자문하는 일인데, 이러한 활동은 과거 LIC 조직에서 수행하던 활동과 유사하다.

4.4 위원회 조직의 위기와 대응 과정에서의 시사점

① 미국의 NCLIS는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개별정책 제안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2002년 초부터 2003년 초까지는 해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Drake(2003, 36)는 "NCLIS의 활동이 정부 안팎으로부터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도서관 밖의 지지층과 강력한 로비그룹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2.5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도서관 안팎과 정치권의 지지를 얻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② 영국의 LIC 조직에 대한 변화 시도는 1997년부터 감지되기 시작하여 1998년 정부의 정책제안서를 계기로 하여 구체화 되었는데, 1999년에 영국국가도서관 연구개발부(BLRIC)의 기능을 LIC로 이관시키고 2000년에는 새로운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를 발족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가대표 도서관에서 갖고 있던 정책연구 기능을 자문기구로 일원화 하였을 뿐 아니라, 도서관·박물관·기록보존소 등 3대 인류문화유산 관리 및 서비스기관을 위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의 커다란 변화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 성과는 좀더 시간을 갖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 미국과 영국의 위원회에 대한 도전과 대응의 과정을 살핀 결과는, 정책자문위원회란 아무리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도 국가적 위기와 재난의 순간이나, 정부기구 구조조정 등의 국가방침에 따라서는 언제나 통폐합 등의 조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도서관계 안팎의 지지 세력과 사회적 영향력의 확보는 필수적 과제라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도서관정책 순환모형에서 이를 제대로 가동시키는 엔진역할을 하는 기구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는 관점에서, 이 기구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과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몇몇 연구에서는 물론 도서관 현장에서 도 자주 거론되어 온 바 있다. 이에 선진국 중 그 운영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와 영국의 '도서관·정보위원회'(LIC), 그리고 이 기구가 통합·개편된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의 기능, 조직과 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미국의 NCLIS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영국의 LIC와 Resource는 주무부처 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되는 등 그 나라 정부조직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되, 양국의 자문위원회가 독립된 위치에서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자문 등의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영·미 양국의 사례와 시사점이 우리의 도서관정책위원회의 법적 기반과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정책 개발 시스템 확립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金容媛. 2003. 『圖書館情報政策』. 東京: 丸善株式會社
- 김창수. 1999. New Millenium과 영국의 공공도서관 정책. 『인문과학』, (광주대) 5: 171-190.
- 문화정책개발원. 2002.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동연구원.
- 이용남. 1996.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제 34회 전국도서관대회 기조연설. 『도서관문화』, 37(6): 8-14.
- Bery III, John N. 2000, Gould's NCLIS Agenda, *Library Journal*, 125(9): 40-42.
- British Council 2000.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LIC). [cited 2003.9.10] <http://www.britcoun.org/infoexch/lisuk/lic.htm>
- Dowling, Michael. 2001. Libraries, Librarians, and Library Associ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 2001: Making a Difference in the Knowledge Age. *IFLA Journal*, 27(3): 133-42.
- Drake, Miriam A. 2003.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Why Not? *Searcher*, 11(2): 32-37.
- LIC. 1999. Annual Report 1995/1997 [cited 2003.8.30] <http://www.lic.gov.uk/publication/policyreports/annual9597.html>
- LIC. 1999. Annual Report 1997/1998 [cited 2003.8.30] <http://www.lic.gov.uk/publication/policyreports/annual9798/intro.html>
- LIC. 199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ited 2003.8.25] <http://www.lic.gov.uk/about/mou.html>
- LIC. 2000. Annual Report 1998/1999 [cited 2003.8.30] <http://www.lic.gov.uk/publication/policyreports/annual9899/intro.html>
- LIC. 2000. Publication. [cited 2003.8.20] <http://www.lic.gov.uk/publications/index.html>
- NCLIS 2003. Annual Reports. [cited 2003.8.15] <http://www.nclis.gov/about/annualreports/annrpt.html>
- NCLIS. 2003. Background on the Commission. [cited 2003.7.20] <http://www.nclis.gov/about/background/background.html>
- NCLIS. 2003. Highlights of the Year. [cited 2003.7.20] <http://www.nclis.gov/about/highlights/>

NCLIS 2003, Millennium Projects.
[cited 2003.8.15]
<http://www.nclis.gov/millennium/descript.html>

NCLIS 2003. NCLIS at 25: Twenty-five years of advancing the public's access to knowledge through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ited 2003.8.15]
<http://www.nclis.gov/about/25yrreport.html>

Resource. 2003.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03.
[cited 2003.9.10]
<http://www.resource.gov.uk/documents/annualfinance2003pdf>

Resource. 2003. Annual Review 2001-02.

[cited 2003.9.10]

<http://www.resource.gov.uk/documents/annualreview01.pdf>

Resource. 2003. Resource's Manifesto
[cited 2003.9.10]

<http://www.resource.gov.uk/home/corporate/01manifesto.asp>

Resource. 2003. Responses to the Library Association Draft Corporate Plan.
[cited 2003.9.20]

<http://www.resource.gov.uk/information/policy/responses/lacorpplan.asp>

Sprehe, Timothy 2001. NCLIS's Wasted Motions. [cited 2003.7.20]

<http://www.fcw.com/fcw/articles/2001/0326/pol-sprehe-03-26-01.asp>